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과목수	시험과목 (1□2차 시험 병합실시)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8개	28명			
	9급	사서	사서	3명	2과목	사회, 자료조직개론	
		공업	일반전기	4명	3과목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녹지	산림자원	2명	3과목	생물, 조림, 임업경영	
		보건	보건	3명	3과목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	일반토목		8명	3과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		5명	3과목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	통신기술		1명	3과목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운전	운전	일반	1명	2과목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시간선택	1명	2과목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시험시간 : 3과목(10:00~11:00) / 2과목(10:00~10:40) ※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 주20시간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②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9급 운전직은 면접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검증을 위하여 면접시험 과정에 45인승 대형버스 운행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며 코스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평정요소별 상·중·하로 종합평가 합니다.

< 면접시험 평정요소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시험 시간(필기시험)

직급명	직류명	과 목 수	시 험 시 간	배 점
9급	일반전기, 산림자원, 보건, 일반토목, 건축, 통신기술	3과목	10:00 ~ 11:00 (60분)	매 과목당 100점 만점
	사서, 운전	2과목	10:00 ~ 10:40 (40분)	매 과목당 100점 만점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응시연령

계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예시) 2007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00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응시가능(현재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이며, 36개월 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일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 2)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 개인별주민등록표 ” 를 기준으로 함
-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라.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 □면허증 제한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단, 기능사는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직류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계급	직렬(직류)	자격증(면허증) 제한		
9급	사서(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일반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산림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계급	직렬(직류)	자격증(면허증) 제한	
9급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3급 이상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운전(운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 ※ 일반, 시간선택 동시 적용	

-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 기능사 자격증 소지시 관련분야 경력산정은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교차 비교하여 일치하는 기간에 한해 인정함.
(단,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 : 1.23(화) ~ 1.25(목) <취소 : 1.23(화) ~ 1.30(화)>	필기	2.1(목)	2.10(토)	2.19(월)
		면접	2.19(월)	2.22(목)~ 2.23(금)	2.28(수)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서류제출일(2.20.)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일시/장소 등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서류제출일에 서류 미제출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고객센터 안내전화번호 : ☎ 1522-0660)
-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9급 :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3.5cm×4.5cm의 jpg 규격이며, 용량은 100KB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불가)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입력 가능)
-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요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4) 응시표는 시험장소 공고일(2월 1일) 이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6)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임용 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1%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호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호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직류별 적용 가산점 : 해당없음

※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는 직류별 가산점(5%, 3%)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9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의 ①호와 ②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민 -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 문제책은 비공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답안지에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이 필요한 분야(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응시)는 경력증명서 (발행기관 날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경력 기간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합니다.

파.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044-300-3074)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민-시험정보』 란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